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규정

2017. 2.16. 제정
2018. 6.12. 개정 2020. 8.11. 개정 2023.05.09. 개정 2023.05.09. 개정 2024.02.13.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소수집단학생 중 장애학생의 교육 및 대학생활 지원을 위해 설치된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의 “장애학생” 이라함은 장애인 등 대상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과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본교 재학생을 말한다.

제2장 조직 및 기능

제3조(조직)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총괄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학생복지처에 장애학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4조(기능) 센터는 장애학생에 대한 실질적 학습권 보장 및 복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애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 시설에 관한 사항
3. 장애학생 경력 및 진로 개발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식개선교육에 관한 사항(연 1회 이상 필수 실시) 개정(2023.05.09.)
6. 기타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2023.05.09.)

제5조(구성) ① 센터에는 업무를 총괄할 센터장을 두며, 실무를 담당할 전담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제3장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장애학생 지원정책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 내에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기획조정처장, 교무교육혁신처장, 학생복지처장, 취업·창업처장, 사무처장,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장은 학생복지처장이 된다. 개정(2018.6.12., 2020.8.11. 직제규정, 2024.2.13. 직제규정)

④ 위촉직 위원은 교직원 및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학생의 교수·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의 생활·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학생의 시설·설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의 장학·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학생의 상담·진로에 관한 사항
6. 장애학생 지원 개선·발전방안에 관한 주요 사항
7. 장애학생 차별관련 신고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8.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회의)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회 사무) ① 위원회의 사무는 학생복지팀에서 관장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직제규정> (2018.6.12.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장애학생지원센터운영 규정」 제5조제3항 중 “기획정보처장”을 “기획조정처장”으로 개정한다.

⑳부터 ㉔까지 생략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생략)

부 칙<직제 규정>(2020.8.1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장애학생지원센터운영 규정」 제6조제3항 중 “교무연구처장”을 “교무처장”으로 개정한다.

⑯부터 ㉗까지 생략

부 칙(2023.05.09.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직제 규정>(2024.2.13.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④ 「장애학생지원센터운영 규정」 제6조제3항 중 “교무처장”을 “교무교육혁신처장”으로 개정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